

B2B매출채권(팩토링)거래약정서

구매 업체명	
-----------	--

법인 번호	
----------	--

계약 번호	
----------	--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기업간 전자상거래서비스 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를 은행 영업점 및 은행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교부(출력)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담 당	책임자	팀 장	부점장

제 1 조 (거래신청)

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B2B팩토링 거래를 신청합니다.

우편번호 :

주소 :

신청인 :

사업자번호 :

신청금액	<input type="text"/>	과 목	외화팩토링채권(Without)
약정기한	<input type="text"/>	자금용도	운전자금
할인료율	<input type="text"/> 연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할인료 지급시기 및 방법	매출채권 매입일에 만기일까지 할인료 선지급	희망지점	<input type="text"/>
지연배상금율	할인료율에 연체기간별 가산율을 더하여 최고 연 <input type="text"/> %이내로 적용합니다. 연체기간별 가산율은 연체기간이 (<input type="text"/>)개월 미만인 경우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개월 이상 (<input type="text"/>)개월 미만인 경우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개월 이상인 경우 (<input type="text"/>)%를 적용합니다.		
할인료,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년을 360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제 2 조 (여신거래약정)

본인 겸 채권양도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은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매출채권 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통장회전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 관련 수신거래약관을 포함합니다.)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기업간 전자상거래서비스 이용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약약합니다.

1. 거래조건

① 외부자금대여기관(한국은행 등 정부기관 및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은 차입비율 또는 차입이율이 변경시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6조(감액 정치)

① 한도거래 및 분할실행되는 여신의 경우,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일시 정치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곧 갚아야 합니다.

1.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의 구체적인 사유

가. 국가 또는 은행의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여 은행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나. 외환유동성 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은행의 지급역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은행에 유동성 조절대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라. 기타 위의 사유에 준하는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의 구체적인 사유

가. 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2단계 이상 등)한 경우

나. 경영실권자를 변경하여 정상적인 여신거래가 어려운 경우

다.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로 제시된 경우

라. 신문, TV 등 공신력 있는 매스미디어에 본인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뉴스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마. 본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없거나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정지를 없애기로 합니다.

제 7조(상환통화 및 환율)

외화대출의 원리금은 차용통화 또는 원화로 상환할 수 있으며, 원화로 상환하는 경우 적용환율은 상환당일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 8조(자료의 제출 등)

① 채무자는 은행이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3. 매 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

4.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② 채무자는 은행이 본인에 대한 신용평가시 기업의 외환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 현황

2.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

3.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

제 9조(보험계약)

① 담보제공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은행이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맺고,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 위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거나 은행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맺고 그 보험증권을 은행에 교부하며,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동안 이를 계속 유지하기로 합니다.

② 담보제공자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 외에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따로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는 이를 곧 은행에 통지하며, 은행이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그 보험계약에 관하여도 제1항과 같은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③ 담보제공자가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은행이 채권보전상 필요한 보험계약을 담보제공자를 대신하여 맺거나 계속하고 그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담보제공자는 채무자와 연대하여 은행이 지급한 보험료 기타의 제 비용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터잡아 은행이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기한도래전일지라도, 은행은 그 수령금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10조(다른담보 보증약정과의 관계)

①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이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각각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② 담보가치의 하락 등에 대비한 은행의 청구에 따라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하기로 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약관-308호
LN-A-FM-360 (2016.06.07 개정)



제 11조(담보 등의 변경 해지 해제)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이 동의를 한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 등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이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은행은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12조(회보와 조사)

- ① 담보제공자는 담보목적물의 상황에 관하여 은행으로 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곧 회보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기로 합니다.
- ② 특정저당권의 경우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은행은 저당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음과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것을 담보제공자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제 13조(절차이행과 비용부담)

- ① 담보제공자는 담보권의 설정·보전·변경·경정·이전·이관·말소 등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여야 할 때에는 은행의 청구 있는 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절차에 드는 비용이나 담보목적물의 조사·점유·보전·관리·처분 및 담보권의 보전과 행사 등에 관한 비용은 계약서상 은행과 담보제공자 및 채무자가 협의하여 비용부담의 주체를 따로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보제공자가 채무자와 연대하여 부담하고, 은행이 대신 지급한 때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이를 곧 갚기로 합니다.

제 14조(채권추심 변제 충당)

은행이 양수한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은행은 그 수령금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15조(담보가치의 유지)

양도인은 공사의 부실·납품의 불합격등 양도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제2조의 양도채권 전액을 수령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곧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부족금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지시에 따라 곧 변제하거나 상당액의 대신할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합니다.

제 16조 (특약사항)

① 은행과 “지급인”이 상호 약정체결한 "B2B납품대금 지급업무 대행 계약서(외화팩토링)"에 의거 다음의 내용을 특약 체결합니다.

1. “지급인”이 은행에 양수금 등 지급을 행함에 있어 채권명세서통보서상의 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매출채권”의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매기업을 가리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가)채권명세서통보를 근거로 매입을 취급한 경우의 매출채권 →매입일시가 빠른순서 나) 동 일자 매입을 취급한 건물 사이에서는 채권명세서 통보순(매매정보 번호가 빠른 순서)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다만, 은행이 판매기업 앞 원활한 매입대금회수를 위해서 상기 충당순서를 달리 적용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은행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

가)업무처리의 대상계좌가 없거나 거래중지 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나)은행의 업무처리가 법적, 기타 등의 사유로 은행의 규정상이 제한이 있을 때, 다) “지급인”에게 부도, 영업정지 등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없다고 은행이 판단하였을 때

3. 은행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입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판매기업이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 신용관리 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경우, 나)“지급인”이 이 은행에게 양도된 매출채권 만 기일에 결제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다)판매기업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라)판매기업에 대해 매출채권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은행에게 제출하지 아니 하는 경우, 마) 전산상 장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바)은행의 내부규정의 변경 및 기타 판매기업에 대하여 매입을 취급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사)판매기업이 서울보증보험(주)의 e-Biz보증보험증권을 담보제공한 경우에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여신중단 통지를 받는 경우, 아)은행과 “지급인”이 상호 약정체결한 "B2B납품대금지급업무대행계약서(외화팩토링)"상의 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되기 전이라도 은행 또는 “지급인”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발행하여 동 계약이 해지된 경우



4. 매입신청, 상환 방법 및 대상은 다음 각 목에 따르기로 합니다.

가) 판매기업은 본 매입약정의 체결전에 서울보증보험(주)와의 보험약정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주)가 은행에 본 매입의 담보조로 e-Biz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판매기업이 약정한도 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내에서 인터넷 또는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Market Place를 통해 서울보증보험(주)로 대금지급에 관한 매매정보를 전송하고 판매기업이 "지급인"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개별적으로 은행에게 매입을 신청하여 매입대금을 받기로 하며, 상환기일은 그 개별 매입금에 대응하는 외상매출채권의 변제기일(대금 만기일자)로 하고 동 변제기일에 채권인 채무자인 "지급인"으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아 충당하기로 한다. 나) 은행의 전산상의 사유로 매입을 취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영업일에 매입하기로 한다. 다) 판매기업에 대한 매입의 실행은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 매입을 신청한 날의 익영업일에 실행하고 매입기간은 210일 이내에서 서울보증보험(주)를 통해 전송되는 대금만기일까지로 운용되며 매입기간의 연장은 불가합니다.

5. 이 약정에 따른 매출채권 매입에 대해서는 본인 앞 별도의 상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의 사유가 있을 때에 은행은 본인 앞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가) 은행이 양도 받은 매출채권이 무효, 취소 등의 사유로 부존재하게 된 때
- 나) 은행이 양도 받은 매출채권에 대한 제3자의 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은행이 매출채권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때
- 다) 본인이 매출채권 매입과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 라)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매출채권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때

6. 본인의 회생절차 신청등에 의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지급인"이 양수금 지급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에 대하여 적용된 할인료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이 "지급인" 앞 지급합니다.

7. 매입취급내용의 서면통보를 생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8. 본인은 본 약정 체결시까지 대상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대상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된 사실도 없으며, 대상채권의 지급인이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본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채권양수인이 대상채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 내용의 진정을 보증하며, 만일 동 사항이 허위임을 은행이 확인한 경우 은행의 청구에 따라 매입금을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이 서울보증보험(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보험료를 은행이 본인에게 취급하는 매입금에서 차감하여 서울보증보험(주)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특약 체결합니다.

1. 서울보증보험(주)에서 전자전송 방식으로 동 보증보험료를 포함한 매매정보를 은행에게 제공하고, 은행이 이를 근거로 매입실행시, 은행은 매입금에서 동 보증보험료를 차감하여, 은행과 MP사, 서울보증보험(주)간 협약체결한 "매매정보제공 및 수수료 등 지급대행 계약서"에 따라 은행이 서울보증보험(주)에게 동 보증보험료를 지급 대행함을 승인합니다

2. 매입실행시 매입금에서 차감된 동 보증보험료는 은행과 MP사, 서울보증보험(주)간 협약체결한 "매매정보제공 및 수수료 등 지급대행 계약서"에 따라 매입의 조기상환시에도 서울보증보험(주)에 지급되며, 이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이 없으므로 본인이 서울보증보험(주)와 직접 해결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③ 본인이 Market Place (이하 'MP사'라고 함)에 대하여 부담하는 데이터 중계 MP수수료에 대하여 은행이 본인에게 취급하는 매입금에서 차감하여 MP사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특약 체결합니다.

1. 서울보증보험(주)에서 전자전송 방식으로 동 MP수수료를 포함한 매매정보를 은행에게 제공하고, 은행이 이를 근거로 매입실행시, 은행은 매입금에서 동 MP수수료를 차감하여, 은행과 MP사, 서울보증보험(주)간 협약체결한 "매매정보제공 및 수수료 등 지급대행 계약서"에 따라 은행이 MP사에게 동 MP수수료를 지급 대행함을 승인합니다.

2. 매입실행시 매입금에서 차감된 동 MP수수료는 은행과 MP사, 서울보증보험(주)간 협약체결한 "매매정보제공 및 수수료 등 지급대행 계약서"에 따라 매입의 조기상환시에도 MP사에 지급되며, 이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이 없으므로 본인이 MP사와 직접 해결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제3조 특약사항 I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확인함	년	월	일	시	분	초
제3조 특약사항 II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확인함	년	월	일	시	분	초
제3조 특약사항 III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확인함	년	월	일	시	분	초

약관 및 동의서 (내용 열람 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기업용)	동의/확인함	년	월	일	시	분	초
약정서 사본 출력 확인	동의/확인함	년	월	일	시	분	초
약정서 내용에 대한 이해 확인	동의/확인함	년	월	일	시	분	초
매입취급내용(신규)의 서면통지를 생략함	동의/확인함	년	월	일	시	분	초

- 본인은 본 약정서(B2B매출채권(팩토링)거래약정서)의 내용에 동의함
-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 하였음
- 약정내용과 관련한 여신취급 내용(신규,갱신,연장,조건변경)의 서면 통지를 생략함

본인

우편번호 : [redacted] 주소 : [redacted]
 신청인 : [redacted] 사업자번호 : [redacted]

서명일시 : 전자서명 년 월 일 시 분 초

채권양수인 (주) 하나은행

본인의 자서확인	소속		직위		성명	(인)
----------	----	--	----	--	----	-----

